

목차

목차			2
영조물배상공제 신청 안내	 	 	3
영조물 배상공제란?	 	 	
사고처리절차	 	 	3
배상청구 단계별 절차	 	 	3
붙임		 	4



영조물배상공제 신청 안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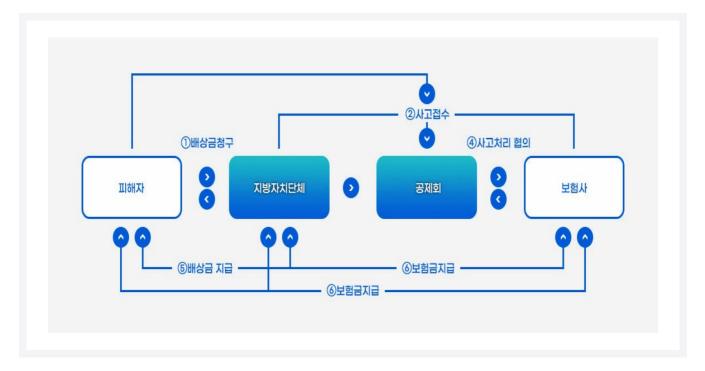
★ = 분야별정보 > = 재난/안전 > = 영조물배상공제 신청 안내



영조물 배상공제란?

시가 소유·사용·관리하는 시설의 설치 및 관리하자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훼손시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배상공제

사고처리절차



- ・보험사는 피보험자의 지급책임 인정 시 일정한 합의를 거쳐 보상한도액 내 보험금 지급
 - ※ 단, 피보험자가 합의하지 않아도 보험금 지급 가능
- >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, 보상한도액 내의 법원 판결금액 지급
- · 상법 제724조에 의거 피해자에게 직접 보험금 을 지급하여, 계약상 자기부담금은 지자체가 피해자에게 지급
 - ※ 직접청구권 행사시 보험사(공제회)에 직접 사고통보 가능, 보험사는 피보험자에게 가입 사실여부 등 확인 후 조사

배상청구 단계별 절차

단계	대상	내용
1단계 : 최초 사고 통보 시	피해 자	신청방법 : 유선 또는 서면(별도양식) 신청기관 : 피보험자, 공제회, 보험사 제출자료 : 사고입증자료*, 진단서 등** * 피보험자의 관리시설에 따른 피해입증자료로 미제출하여도 배상청구는 가능(선택) ** 보험사 사고조사시 제출가능(선택)

(http://www.yeosu.go.kr)

피보험자	• 제출자료 : 피해자의 신고내용 등을 기록한 사고접수양식(보험약관 별지2호) • 제출기관 : 지역 공제회		
2단계 : 보험조사 시	내용: 사고조사 및 관련서류 제출 요청 판단: ① 지급결정 ② 면책결정 보험 제출자료: 보험금청구서 및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[보험약관 제15조] 가 대인: 초진기록지, 진단서, 진료비영수증 등 가 대물: 수리비 영수증 등		
피해자, 피보험자	• 보험사의 사고조사 협조		
3단계 : 보험금 지급 시	보험 · 대상 : 피보험자가 관리하는 영조물에 따른 피해 등 인정과 보험금 지급에 피해자가 동의한 경 사 우		
正同計入計	• 절차 : 신분증, 통장사본, 합의서 등 보험사 제출		
피보험자	· 절차 : 합의서 날인 및 자기부담금 납부* > * 자기부담금은 보험종류별 유무상이		

% 사고내용, 피해정도, 보험가입유무 등에 따라 절차(순서변경 포함)가 달라질 수 있고 피해자, 피보험자에게 조사를 위한 보완요구 가능

붙임







 ${\bf COPYRIGHT} \circledcirc {\bf YEOSU\text{-}CITY.} \ {\bf ALL} \ {\bf RIGHTS} \ {\bf RESERVED}.$

Yeosu Web Contents

